##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55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 박상웅·박덕흠·김종양

고동진 • 정연욱 • 김 건

우재준 • 박수민 • 유용원

이상회 • 최은석 • 김미애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보조·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폭우 현상이 증가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 제3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그 밖에"를 각각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재해대책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 관은 재해의 예방과 효율적인 재해대책 수립을 위하여 매년 재해발 생 현황에 관한 재해대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긴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긴급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	2
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	
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	
(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	
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	
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	
생동물을 말한다), <u>그 밖에</u>	<u>z</u> ]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	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그 밖
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u>에</u>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	
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	
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	3
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 13. (생략)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u></u>주단 신설>

1. ~ 5. (생 략) <u><신 설></u>

기그 ( 나침 드 기중버치 ㄱ
<u>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그</u> 밖에
<del></del>
4. ~ 13. (현행과 같음)
제3조(재해대책)
o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재해대책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
산부장관은 재해의 예방과 효
<u>율적인 재해대책 수립을 위하</u> 여 매년 재해발생 현황에 관한
재해대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

 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

 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긴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 대조사 및 긴급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